

2023년도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확대지정 공고

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우리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·지원하고자 「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」 및 「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지정 및 취소)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정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5. 16.

여 수 시 장

1. 지정 개요

○ 모집기간 : 23. 5. 16.(화) ~ 5. 31.(수) 18:00까지

○ 모집대상 : 20개소

- 외식업, 개인서비스업(이·미용업, 목욕업, 기타 서비스업 등)

< 신청 제한 대상 >

-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
-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
-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
-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(신청일기준)
-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-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('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' 확인)

○ 신청방법 : 방문, 메일 또는 팩스

- 대표자 직접 신청, 읍·면·동장, 소비자단체 등 추천 병행

• (방문접수)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,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/ ☎ 659-360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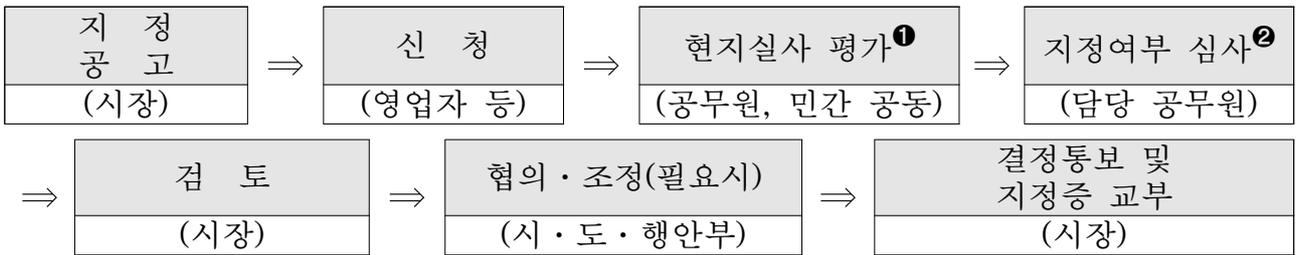
• (메일접수) audwl2960@korea.kr / (팩스접수) 061-659-5816

○ 제출서류 : 신청서 (붙임 1), 사업자등록증·신분증 사본, 가점 증빙서류

※서류 제출 후 접수 확인 필수 (☎ 061-659-3605)

○ 지원내용 : 쓰레기봉투, 소모품 등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및 홍보

○ 지정절차



① 현지실사 평가 : 현지실사 평가단(공무원, 소비자 단체 등)이 지정기준(붙임 2)에 따라 현지 실사 후 평가

②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: 현지실사 평가 후 심사를 통해 지정 결정 및 통보

2. 지정 기준

❖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❖

- ▶ 평점 총합이 **70점(가점 포함)** 이상인 경우 지정하되 저가메뉴 비중, 가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정.
- ▶ 일부 지표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→ 지정 보류 가능
- ※ 관내 착한가격업소 총량은 여수시 실정을 고려하여 지정

○ 메뉴 비중(25점)

- 전체메뉴 중 평균가격 미만에 해당하는 메뉴 개수가 최소 2개 이상 이어야 하며, 업소의 주요메뉴 중 하나이어야 함
- ※ 다만, 전체메뉴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가능

○ 가격(30점)

- (가격수준 20) 착한가격 메뉴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
- (가격안정 노력 10) 현재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유지한 기간

○ 이용만족도(20점)

- 가격, 메뉴, 서비스 등 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

○ 위생·청결(20점)

- 주방, 매장 내, 화장실 등 청결 및 관리상태

○ 공공성(5점)

- 여수시 각종 시책 이행여부(옥외가격표시제, 원산지 표시제 등)

○ 가점 부여(10점)

- 지역사회 봉사활동, 사회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
- 상품권가맹점 가입, 정부·지자체 표창 수상내역

3. 지원 계획

○ 인센티브 지원

- 착한가격업소 표찰 지원
- 쓰레기봉투, 소모품 등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

○ 홍보 및 이용 활성화

- 여수맛 어플리케이션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 및 홍보
-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, 시 홈페이지, 관광문화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

- 붙임 1.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1부.
2.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1부. 끝.

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				
업소일반 현황	업 소 명			대 표 자
	업 종			전화번호 업소 휴대폰
	소 재 지			사업자 등록번호
	영업기간 (최초영업일자) ~ (.)		
주요 취급품목 가격	품 목	가 격(원)	품 목	가 격(원)
가격안정 노력	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	여() / 부() [품목 : , 인하시기 :]		
	가격동결	1년 이상() / 1년 미만() / 6개월 미만()		
	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	여() / 부() [품목 : , 인상시기 :]		
정부시책 이행 (○표기)	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	이행 () / 미이행 ()		
	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	이행 () / 미이행 ()		
	지역사랑상품권 취급	여 () / 부 ()		
	모범업소 지정 여부	여 () / 부 ()		
친절도 및 청결도	종사자 친절도	상, 중, 하 / 설명		
	영업장 청결도	상, 중, 하 / 설명		
할인 및 표창여부	할인 여부 : 경로 우대() / 청소년 할인() / 특정시간대 할인()			
	표창 여부(최근 5년간) : 국무총리 이상() / 도지사, 장관() / 자치단체장[시장, 군수]()			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조회 2.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,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조회 3.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여부			
<p>위와 같이 착한가격 업소 지정을 신청(추천)합니다.</p> <p>2023년 월 일</p> <p>신청인(추천인) : (인)</p> <p>여수 시장 귀하</p>				

※ 해당요금 : 외식업은 업소의 대표메뉴 2종을 기재, 이용업(성인 컷트 1회)
미용업(성인여자 컷트 1회), 목욕업(성인1회), 세탁업(신사복, 상하 드라이클리닝 1회)
※ 첨부서류 : 사업자등록증 1부, 신분증 사본 1부, 가점 증빙서류

□ **요식업**

분야	지정기준		배점	
총 점			100점	
메뉴비중 (25점)	착한 가격메뉴 비중(25점)	■ 전체 메뉴 중 '착한가격메뉴' 개수 ※ 착한가격 메뉴가 2개 미만인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 불가(다만, 전체 메뉴가 5개 이하인 경우는 제외)	4개 이상	25
			3개	20
			2개	15
가격 (30점)	가격수준 (20점)	■ '착한가격메뉴'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※ (배점) 신규지정 30점, 재지정 20점	평균가격 미만 20%	30 20
			평균가격 미만 10%	25 15
			평균가격 미만 5%	20 10
	가격안정 노력(10점)	■ 가격동결 유지기간 정도 ※ 신규지정시 미평가(재지정시 평가)	1년 이상	10점
1년 미만~6개월 이상			5점	
6개월 미만			0점	
이용 만족도 (20점)	이용만족도 (20점)	■ 업소 이용전반에 대한 만족도(친절도, 품질, 위생 등) ※ 공공배달앱, 네이버·다음 등 포털사이트 만족도를 활용하여 평가. 다만, 포털사이트 등 만족도 결과가 없을 경우 모니터요원 등 평가자의 평가결과 점수를 활용 - 공공배달앱, 포털사이트 만족도 - 모니터요원 등 평가자 만족도	20점	
			(10점)	
			(10점)	
위생· 청결 (20점)	주방 등 (10점)	■ 바닥 내수처리 및 수세, 배수시설 청결도(5점) ■ 위생복·위생모 착용도, 칼·도마·수저소독 여부(5점)	10점	
			매장 내 (7점)	■ 식탁·의자 정리, 행주 등 용도별 사용, 소독용품 비치, 또는 손씻기 시설 설치, 정수기 위생관리 수준 등
	화장실 (3점)	■ 수세·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- 세척제, 에어타월, 위생종이 구비여부, 남녀 구분 등 ※ 화장실 매장 단독 이용인 경우만 평가 실시(단독이 아닌 경우 '주방 등' 배점에 포함)	3점	
공공성 (5점)	■ 옥외가격 표시제,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(5)	모두 이행	5점	
		일부 이행	0점	

※ (평균가격)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권(읍·면·동, 반경 2km, 역세권 등)을 설정(평균 가격 산정을 위한 업소 모수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정)하거나, 물가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업소 지정 전에 평균가격을 설정

〈가점 부여 (10점)〉

- 지역사회 봉사활동, 특정계층, 사회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실현, 지역화폐가맹점 가입, 정부·지자체 표창 수상, 장기간 가격동결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점수 부여

□ 비요식업

분야	지정기준		배점		
총 점			100점		
품목비중 (25)	저렴한 가격상품 비중(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체 메뉴 중 '착한가격메뉴' 개수 ※ 착한가격 메뉴가 2개 미만인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 불가(다만, 전체 메뉴가 5개 이하인 경우는 제외) 	4개 이상	25	
			3개	20	
			2개	15	
가격 (30점)	가격수준 (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저가품목(전체품목의 50% 이상)의 지역 평균가격 미만 정도 ※ 저가품목이 지역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 불가 	평균가격 미만 20%	30	20
			평균가격 미만 10%	25	15
			평균가격 미만 5%	20	10
	가격안정 노력(1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가격동결 유지기간 정도 ※ 신규지정시 미평가(재지정시 평가) 	1년 이상	10점	
			1년 미만~6개월 이상	5점	
			6개월 미만	0점	
이용 만족도 (20점)	이용만족도 (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업소 이용전반에 대한 만족도(친절도, 품질, 위생 등) ※ 공공배달앱, 네이버·다음 등 포털사이트 만족도를 활용하여 평가. 다만, 포털사이트 등 만족도 결과가 없을 경우 모니터요원 등 평가자의 평가결과 점수를 활용 	20점		
					- 공공배달앱, 포털사이트 만족도
					- 모니터요원 등 평가자 만족도
위생· 청결 (20점)	주영업시설 (1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업소 주 영업시설내 시설, 용품 등 위생관리, 청결도 ※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평가 	15점		
	화장실 (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수세·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- 세척제, 에어타월, 위생종이 구비여부 등 ※ 화장실이 업소 단독 이용인 경우만 평가 실시(단독시설이 아닌 경우 주영업시설에 포함하여 평가) 	5점		
공공성 (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옥외가격 표시제,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(5) 	모두 이행		5점	
		일부 이행		0점	

※ (평균가격)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권(읍·면·동, 반경 2km, 역세권 등)을 설정(평균 가격 산정을 위한 업소 모수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정)하거나, 물가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업소 지정 전에 평균가격을 설정

< 가점 부여 (10점) >

- 지역사회 봉사활동, 특정계층, 사회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실현, 지역화폐가맹점 가입, 정부·지자체 표창 수상, 장기간 가격동결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점수 부여